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5일, 정희용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9. 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희용의원)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4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촌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농업소득 외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고령농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축소는 농촌 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됨.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고령농 등에 대한 소득지원 기능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 제35조의2)

개정안 제35조의2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51)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4조제1항²⁾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토지공시가격등”) 6억원까지 재산세액을 면제하고,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있는 현행법 제35조의2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023년 농가고령인구가 처음으로 50%를 넘어 농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³⁾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하므로 고령층 농민들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계 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인정되는 점,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그 요건이 제한되고 있는 점⁴⁾ 등을 감안할 때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3)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농가 52.6%, 임가 52.8% (통계청, ‘2023년 농림어업조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①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공사에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제19조의10제2항제2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령) 이상일 것
2.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 두 개정안 모두 일몰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일몰기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김종양의원안에 따라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재산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49억원(연평균 3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